

서울특별시 강남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6. 11.

행정재경위원회

의안 번호	375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5. 30. 강남구청장(정책홍보실)

나. 상정의결

- 제319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2024. 6. 11.)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행정국장 : 이호현)

가. 제안이유

- 1994년 제정된 강남구의 휘장 작도법 등이 서로 달라 올바르게 통일하고자 함.
 - [별표 1.1] 상징물의 종류(제3조 관련)의 휘장 모형도(기본형, 작도법, 그리드)의 형태가 제각각 다르게 제정
 - [별표 2] 강남구기(제6조제1항 관련)의 휘장 모형과 규격 정비
 - [별표 3] 강남구 배지 모형도(제7조 관련)의 모형 정비

나. 주요내용

- 휘장의 기본형 및 작도법 정립(별표 1.1)
- 휘장의 의미 및 색상 개정(별표 1.1)
- 기본형 정립에 따른 강남구기 및 강남구 배지 모형도 정비(별표 2, 별표 3)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 없음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입법예고 : 해당 없음
-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 생략
 -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5)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사항 없음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구경남)

- 강남구 상징물인 휘장, 해당 휘장이 포함된 강남구기와 강남구 배지에 통일된 기준으로 정비한 휘장 모형을 적용하여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규정을 정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임.
- 강남구를 표현하는 상징물 중 휘장에 대해서는 1994년 행정규칙의 하나인 예규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상징물 규정」이 제정되어 작도법 등의 설명이 삽입되었음.
- 이후 상징물 관리의 법적 기준은 기존의 예규에서 2023. 1. 6. 의원입법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상징물 조례」로 강남구의 정체성 확립과 위상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예규에서 조례로 격상하여 제정되었음. 강남구를 표현하는 상징물 중에서도 휘장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각종 재산, 명패, 증서, 인쇄물, 그 밖의 자료 및 상품 등 다양한 곳에 사용되고 있으며 휘장을 사용하는 곳은 조례에 명시된 강남구기와 강남구 배지에 국한되지 않음.
- 이 조례안은 강남구 상징물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가 통일성을 갖추지 못한 채 제각기 사용되는 문제를 바로 잡으려는 것으로

- 같은 조례에서 상징물을 표현하는 모형이 제각기 다른 형태로 되어 제작 기준이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 기준이 되는 조례에 포함된 모형도 등을 정비하여 혼선을 막고자 하는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하겠음.
- 다만, 조례의 제정 목적이 상징물의 관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조례 일부 내용의 오류로 관리에 혼선을 초래하여 정체성 확립과 위상을 높이는데 지장을 초래한 점
둘째, 기준이 된 모형도가 불일치 한다는 것을 인지(예규 포함)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방치하여 관리소홀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셋째, 오랫동안 사용된 제작물들은 이후 순차적으로 정비대상이 되어 또다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행정의 자기책임성을 되돌아 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상징물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부터 별표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상징물의 종류 (제3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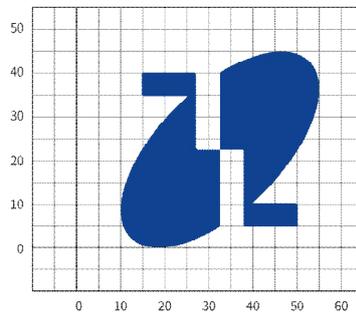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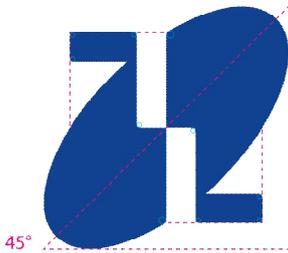
1. 휘장

(1) 모형도

① 기본형



② 작도법(그리드)



(2) 휘장의 의미

역동적인 타원형은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늘 앞으로 나아가는 진취적인 자세를 보여준다. 강남구의 초성 “ㄱ”과 “ㄴ”이 서로 맞닿은 모습은 구민들 간의 유대감과 소통, 그리고 글로벌 도시로서의 연결성을 상징한다. 둥근 모서리는 구민 친화적인 가치관을 나타낸다.

(3) 색상

휘장의 색상인 군청색은 색채 심리학적으로 신뢰, 혁신, 평화를 느끼게 하는 색으로 강남구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다양한 측면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색이다. 또

한 휘장의 도안을 이용할 때에는 활용 분야에 따라 다양한 보조색을 사용할 수 있다.



2. 꽃: 목련

이른 봄에 피어나는 청아하고 아름다운 꽃으로 강남구민의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과 고고한 기품을 상징

3. 나무: 은행나무

무병장수하며 선비같이 곧은 강남구민의 진취적인 기상을 상징

4. 새: 까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길조로 강남구의 새로운 발전과 화합을 상징

[별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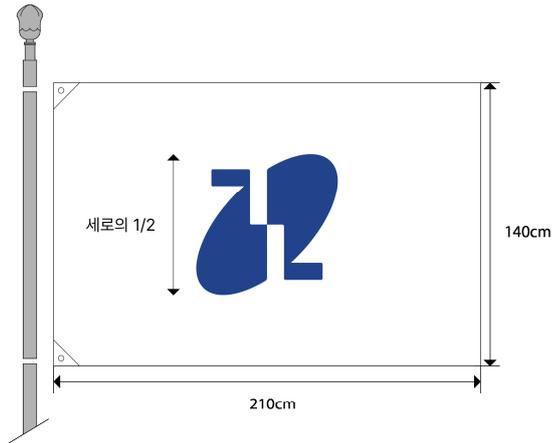
강남구기(제6조제1항 관련)

1. 강남구기

(1) 모형 및 규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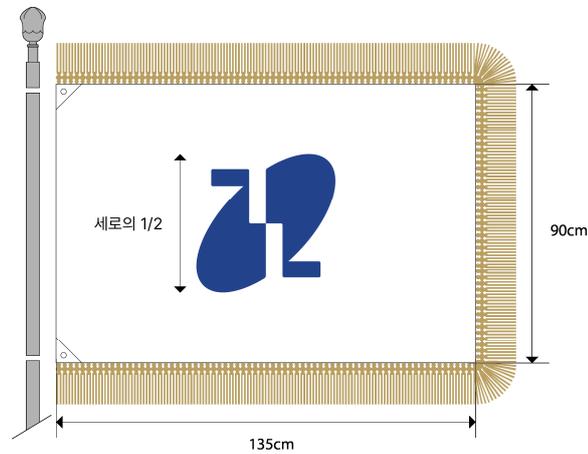
게양용(실외)

※ 구청사, 구의회, 동 주민센터 그 밖에 부속청사에 게양한다.



비치용(실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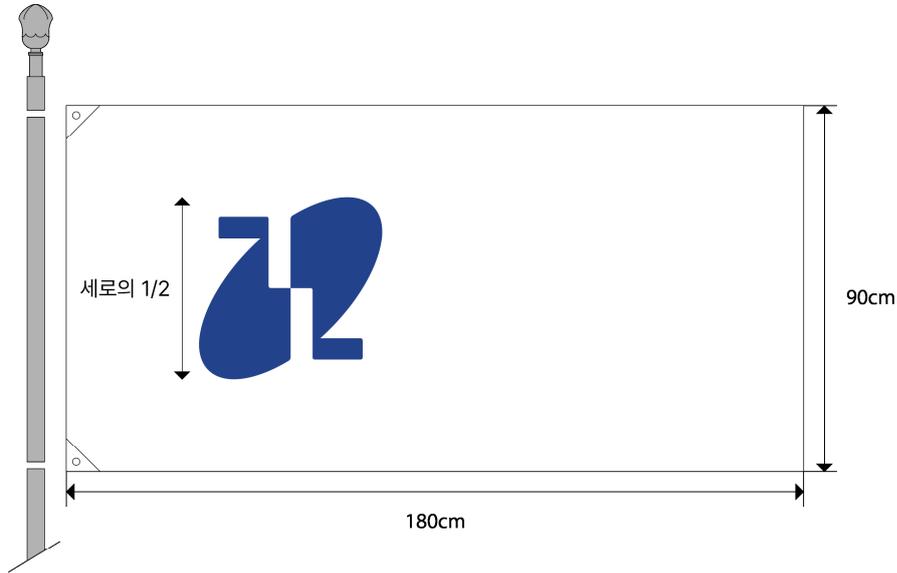
※ 구청장실, 구의회 의장실, 동장실에 갖추어 둔다.



(2) 재료(색상)

- 약기 : 백색 바탕, 청색 휘장 또는 청색 바탕, 백색 휘장
- 정기 : 청색 바탕, 황금색 휘장, 모서리 부분은 금실 부착

2. 경축용, 체육행사용



(1) 사용 방법

경축행사 또는 체육행사 등의 경우 구기의 깃면을 늘여서 게양하거나 사용할 때에는 가로 길이의 흰 부분만을 필요한 만큼 길게 하여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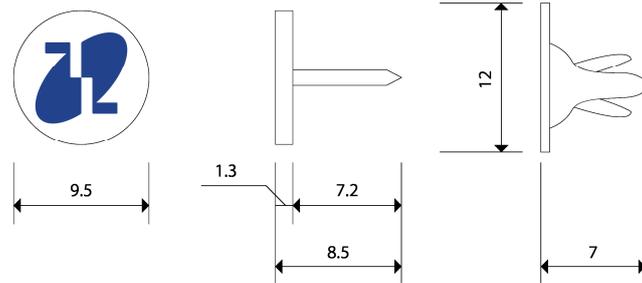
(2) 재료(색상)

백색 바탕, 청색 휘장 또는 청색 바탕, 백색 휘장

[별표3]

강남구 배지 모형도(제7조 관련)

(1) 모형



(2) 규격

- 지름: 9.5mm(± 0.2 mm)
- 두께: 1.3mm(± 0.2 mm)
- 재질: 황동(구리 60%, 아연 40%)
- 착색: 금도금 0.1미크론(± 0.02 mm)에 1도 착색

(3) 제작 방법

1) 금형 제작

강남구 심볼마크 평면 양각으로 조각

2) 색 상

원형바탕: 금도금

휘 장: 청색(BLUE)

신 · 구별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1] 상징물의 종류(제3조관련)</p> <p>1. 휘장 (1) 모형도 ① 기본형</p>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20px 0;">  </div> <p>② 작도법(그리드)</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margin: 20px 0;">   </div> <p>(2) 휘장의 의미 중간의 다이내믹한 타원은 상승 발전하는 강남의 미래상을 나타내고 “ㄱ”과 “ㄴ”은 강남을 표시하며 전체적인 조형은 부드러운 곡선과 강한 사선을 연결하고 아늑한 주거환경과 첨단빌딩을 연상케 하여 활기 넘치는 이미지를 상징한다.</p> <p>(3) 색상 휘장의 색상은 색채 심리학적으로 젊음·패기·진취를 느끼게 하는 이미지가 전달되도록 청색을 사용한다. 다만, 휘장의 도안을 이용할</p>	<p>[별표1] 상징물의 종류(제3조관련)</p> <p>1. 휘장 (1) 모형도 ① 기본형</p>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20px 0;">  </div> <p>② 작도법(그리드)</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margin: 20px 0;">   </div> <p>(2) 휘장의 의미 역동적인 타원형은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늘 앞으로 나아가는 진취적인 자세를 보여준다. 강남구의 초성 “ㄱ”과 “ㄴ”이 서로 맞닿은 모습은 구민들 간의 유대감과 소통, 그리고 글로벌 도시로서의 연결성을 상징한다. 등근모서리는 구민 친화적인 가치관을 나타낸다.</p> <p>(3) 색상 휘장의 색상인 청색은 색채 심리학적으로 신뢰, 혁신, 평화를 느끼게 하는 색으로 강남구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다양한 측면에서 상</p>

때는 바닥의 여건에 따라 보조색을 사용할 수 있다.



2. 3. (생략)

4. 새: 가치

기쁜 소식을 전해 주는 길조로 강남구의 새로운 발전과 화합을 상징

[별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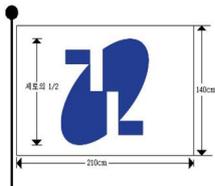
강남구기(제6조제1항 관련)

1. 강남구기

(1) 모형 및 규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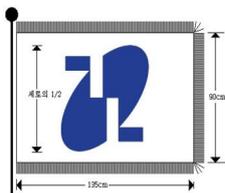
계양용(실외)

※ 구청사·구의회·동주민센터 그 밖에 부속청사에 게양한다



비치용(실내)

※ 구청장실, 구의회 의장실, 동장실에 갖추어 둔다.



(2) 재료(색상)

- 약기 : 백색바탕, 청색휘장 또는 청색바탕, 백색휘장

징적으로 나타내는 색이다. 또한 휘장의 도안을 이용할 때에는 활용 분야에 따라 다양한 보조색을 사용할 수 있다.



2. 3. (현행과 표같음)

4. 새: 가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길조로 강남구의 새로운 발전과 화합을 상징

[별표2]

강남구기(제6조제1항 관련)

1. 강남구기

(1) 모형 및 규격

계양용(실외)

※ 구청사, 구의회, 동주민센터 그 밖에 부속청사에 게양한다



비치용(실내)

※ 구청장실, 구의회 의장실, 동장실에 갖추어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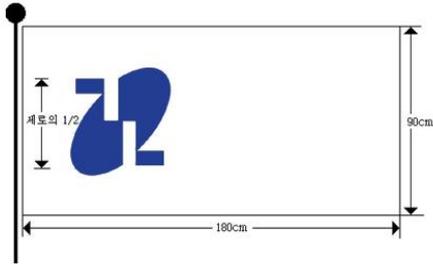


(2) 재료(색상)

- 약기 : 백색 바탕, 청색 휘장 또는 청색 바탕, 백색 휘장

- 정기 : 청색바탕, 황금색휘장
모서리부분은 금실 부착

2. 경축용, 체육행사용



(1) 사용방법

경축행사 또는 체육행사 등의 경우 구기의 깃면을 늘여서 게양하거나 사용할 때에는 가로길이의 흰부분만을 필요한 만큼 길게 하여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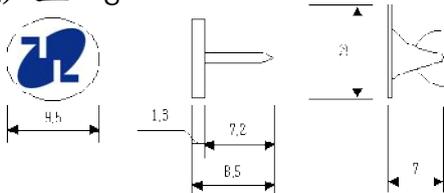
(2) 재료(색상)

백색바탕, 청색휘장 또는 청색바탕, 백색휘장

[별표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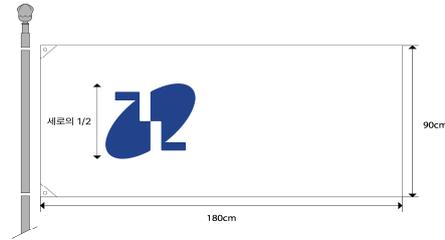
강남구 배지 모형도(제7조 관련)

(1) 모형



- 정기 : 청색 바탕, 황금색 휘장, 모서리 부분은 금실 부착

2. 경축용, 체육행사용



(1) 사용 방법

경축행사 또는 체육행사 등의 경우 구기의 깃면을 늘여서 게양하거나 사용할 때에는 가로 길이의 흰 부분만을 필요한 만큼 길게 하여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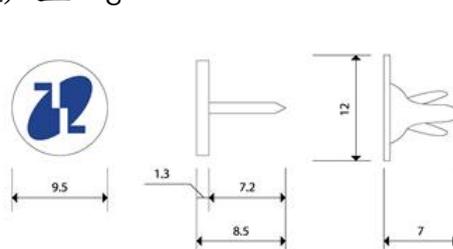
(2) 재료(색상)

백색 바탕, 청색 휘장 또는 청색 바탕, 백색 휘장

[별표3]

강남구 배지 모형도(제7조 관련)

(1) 모형



(2) (생략)

(3) 제작방법

1) 금형제작

강남구 심볼마크 평면 양각
으로 조각

2) 색 상

원형바탕: 금도금

휘 장: 청색(BLUE)

(2) (현행과 같음)

(3) 제작 방법

1) 금형 제작

강남구 심볼마크 평면
양각으로 조각

2) 색 상

원형바탕: 금도금

휘 장: 청색(BLUE)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비용추계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는 1994년 제정된 강남구의 휘장 모형도(기본형, 작도법, 그리드) 형태가 제각각 다르게 제정되어 혼란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비용 추계 비대상임.

4. 작성자

- 정책홍보실 행정7급 안 정(02-3423-5084)